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6.7.26)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 (펀드코드 : 34270)

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회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회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	---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회사는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하여 그 수익을 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회사,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주) (02-3787-35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9,999조 주		
효력발생일	2016년 7월 30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A1	Ae	C1	Ce	C-W	
가입자격	제한없음	온라인가입	제한없음	온라인가입	Wrap 계좌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선취)	납입금액의 0.5% (선취)	-	-	-	
환매수수료	없음		90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70%			
보수 (연, %)	판매	0.5000	0.2500	1.5000	0.9000	0.0000
	운용 등	운용보수 : 0.6500 신탁보수 : 0.0300 사무관리 0.0600				
	기타	0.0030	0.0000	0.0000	0.0000	0.0020
	총보수비용	1.2430	0.9900	2.2400	1.6400	0.7400

※ 주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C2, C3, C4, C5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는 매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 기타비용은 이 투자회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	--	--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시30분 이 전: 제2영업일 기준가 · 15시30분 경과후: 제3영업일 기준가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시30분 이 전: 제2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 · 15시30분 경과후: 제3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
-------	--	-------	--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을 직전일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1,000주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공시방법: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midasasset.com),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	--	--	--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회사는 자산의 60% 이상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운용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전략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하여 그 수익을 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해 회사는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투자전략

가. 기본 운용전략

1) 회사는 회사의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식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채권 등에 자산총액의 40% 이하를 투자하며, 각 부분의 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식 투자전략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자본이득추구를 기본전략으로 하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주권상장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포함)에 투자합니다. 주식투자자 관련하여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매거래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 채권 투자전략

회사는 자산을 다음과 같은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채권 투자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1)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2)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사모사채 제외)

다) 파생상품 투자전략

현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행사가격이 현재주가수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여 콜옵션 프리미엄을 꾸준히 확보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여 주가하락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송형섭	1974	책임 운용역	2	11억	-서울대 경영대학원 -01.05월~05.04월 랜드마크자산운용 -05.08월~06.04월 유리스투자자문 -06.04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종류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Class A1		(15.05.01~16.04.30)	(14.05.01~15.04.30)	(13.05.01~14.04.30)	(12.05.01~13.04.30)	(11.05.01~12.04.30)
	집합투자기구	-9.01	10.25	-5.99	0.44	-15.42
	비교지수	-4.17	6.96	0.72	0.28	-5.87

주1) 이 투자회사는 운용전략 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비교지수로 적절한 벤치마크가 없습니다.

주2) 종류 A1(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회사는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시장위험)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의 주식운용 전략으로 인한 위험	주식 투자시 주식시장 평균을 능가하는 투자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에 선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회사의 운용실적이 참고지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으로 인한 위험	이 투자회사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므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또는 완만히 상승할 경우 커버드콜 전략을 통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주가가 단기 급등할 경우 투자회사의 수익률 상승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 해산위험	투자회사는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 발생/ 주주총회의 결의/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금융감독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회사 설립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회사 설립후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회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등급

이 투자회사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회사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13.30%**이므로 아래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회사는 주식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이해하며,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추후 매결산시마다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기준표>

등급	1(매우높은위험)	2(높은위험)	3(다소높은위험)	4(보통위험)	5(낮은위험)	6(매우낮은위험)
수익률 변동성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수익률 변동성: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실제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

(3) 위험관리

이 투자회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회사로 주식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회사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회사 단계에서의 과세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회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회사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및 과세율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

1) 배당소득세

- 개방형 투자회사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투자회사 주식을 환매할 경우, 환매 시 이익은 장외주식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배당소득의 과세표준에는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상장 주식,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주가지수선물·옵션의 매매·평가 차익은 제외되며, 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보유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보유채권의 양도차익 등은 포함됩니다.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2)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개인투자자의 당해년도 이자 및 배당소득(투자회사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포함)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당해 개인투자자는 종합소득신고의 의무를 지게 되나, 당해년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주주에 대한 과세>

- 법인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법인주주는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되고 배당세액공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및 과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1) 종류간 전환 절차

이 투자회사는 주주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주식의 보유기간(당해 주식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주식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주주가 최초로 매입하는 주식은 종류 C1 주식에 한합니다.

1. C1종류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2종류 주식으로 전환
2. C2종류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3종류 주식으로 전환
3. C3종류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4종류 주식으로 전환
4. C4종류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5종류 주식으로 전환

※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주주의 (일부)환매청구에 따라 해당 주식의 (일부)환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환하지 아니하고, 당해 (일부)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재무정보

※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